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
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진영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2020년 개최예정인 2개 국제행사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주요 국제행사로 추가하고, 수익금 집행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배분금액 등 사전통보 절차 마련

3. 주요내용

가. 주요 국제행사 추가(안 별표2)

‘2020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’, ‘2020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(ANOC)총회’ 등 2개 국제행사를 주요 국제행사로 추가

나. 배분액 등 사전통보 규정 마련(안 별표2)

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주요 국제행사에 대한 지원금 총액과 연도별 배분액을 전년도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 통보하는 규정 추가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○○○○○부 등과 협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1. 23. ~ 2. 12..)
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1호 중 “국제행사: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”를 “국제행사”로 하고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표 제3호나목에 3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2020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

나. 2020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(ANOC)총회

3)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1호에 해당하는 국제행사에 배분하고자 하는 수익금의 총액을 해당 국제행사에 배분하기로 결정한 연도의 말일까지, 다음 연도에 배분할 금액은 그 전년도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541